

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8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 29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주차장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과태료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세입금의 부과징수(안 제6조)
- 마.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(안 제7조)
- 바.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- 주차장법 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- 주차장법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- 주차장법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
- 주차장법 제19조제5항(부설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금)
- 주차장법 제24조의2(과징금처분)
- 주차장법 제30조(과태료), 주차장법 제32조(이행강제금)
-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(주정차 위반 과태료)
- 입법예고 - 결과 의견내용 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,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
2.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
3.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
4.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6. 정부의 보조금
7.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
8.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.

1.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설치, 관리 및 운영비
2.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
3.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자원
4.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
5.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

제4조(회계공무원 지정)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, 출납공무원은 교통행정담당(6급)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 책임)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,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제6조(세입징수) ①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입금, 납부금, 과징금, 과태료,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.

제7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.

제8조(보조금)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
2.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

②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%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,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보조금의 반환) ①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
2.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(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

제 호		년도		제 호		년도		제 호		년도	
성 명		성 명		성 명		성 명		성 명			
주 소		주 소		주 소		주 소		주 소			
건 명		건 명		건 명		건 명		건 명			
금 액		금 액		금 액		금 액		금 액			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		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		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		위 금액을 영수함					
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
200 년 월 일		200 년 월 일		200 년 월 일		200 년 월 일					
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		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		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		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					
출납명령관		출납명령관		출납명령관		출납명령관					